

제55권: 2009. 5. 13.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

허 덕 이정민 이형우

1. 머리말	1
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경과와 쟁점 사항	1
3. 수입재개 절차	7
4.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	9
5.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	12
6. 시사점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용 문의:	허 덕 연구위원	02-3299-4261	huhduk@krei.re.kr
	이정민 연구원	02-3299-4198	fantom99@krei.re.kr
	이형우 연구원	02-3299-4309	lhw0906@krei.re.kr
자료 문의:	이성규 (정보플라자)	02-3299-4213	sklee@krei.re.kr

- 「KREI 농정연구속보」는 정책 담당자, 농업인, 연구자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결과를 간결히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머리말

2003년 5월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광우병 발병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됨.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캐나다를 광우병 통제 가능 국가로 판결한 이후 캐나다는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요구하고 있음.

2009년 3월 20일 캐나다 농업식품부 장관은 한국 측이 일정기간 내에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일정을 제시하고 상반기 내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09년 4월 9일 캐나다 정부는 자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하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함.

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경과와 쟁점 사항

2.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경과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현황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2000년 최대 1만 9천 톤까지 수입되었으며, 당시 전체 수입 물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8.0%이었음. 2003년 5월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되어 2003년 수입된 물량은 5천 톤에 불과함.

2003년 광우병 발병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로 이후 수입된 물량은 없는 상황임.

표 1.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현황

단위 : 천톤

	캐나다산 수입물량	전체 수입물량	수입량중 비율
2000	19	238	8.0 %
2001	6	166	3.6 %
2002	12	292	4.1 %
2003	5	294	1.7 %

주: 광우병 발병에 따른 수입금지로 2003년 이후 수입량은 없음.
 자료: 관세청.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국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 대해 이집트, 홍콩, 멕시코, 러시아 등의 19개국 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미국, 유럽 연합 등 38개국에 달함.

표 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국가 현황

구분	30개월령 미만	30개월령 이상
국가명	안티구아 버뮤다, 아이슬란드,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홍콩, 레바논, 마케도니아, 멕시코, 러시아, 세인트 키티스&네비스, 대만, 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바바도스, 버뮤다, 쿠바, 유럽연합(27), 세인트 피에르 미켈론(프랑스령, 모든 부위 허용), 마카오,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 인도네시아, 요르단

자료 : CBEF Korea 뉴스레터(봄호), 캐나다우육수출협회.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협상 일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되면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됨.

2007년 5월 22일 국제 수역사무국(OIE)은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 내렸으며, 캐나다는 이를 근거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요구하기 시작함.

2008년 11월 3일 한국·캐나다 수입위생조건 2차 협상이 있었으나, 동월 15일 알버타 주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서 협상은 중단된 상태임.

2009년 3월 20일,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가 한국을 WTO에 제소할 의향이 있음을 통보함.

2009년 4월 9일, 캐나다 정부는 WTO에 한국을 제소함.

표 3.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관련 일지

일 자	내 용
03. 5. 20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광우병 발병 확인 및 쇠고기 수입 금지
07. 1. 19	캐나다 정부, 한국정부의 캐나다 쇠고기 중단 지속근거 WTO 질의
07. 2. 19	캐나다 정부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 해명
07. 5. 22	국제 수역사무국(OIE), 미국과 캐나다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
07. 6. 13	한국·캐나다 기술 협상(수입위험 평가 3단계 완료)
07. 7. 12	캐나다 정부, 사료금지조치 강화
07. 7. 29	한국 농림부/검역원 캐나다 현지조사(수입 위험평가 4단계 완료)
07. 10. 26	캐나다 쇠고기 관련 가축 방역협의회 개최(수입 위험평가 5단계 완료)
07. 11. 22	한국·캐나다 수입위생조건 협상(수입 위험평가 6단계 진입)
08. 11. 3	한국·캐나다 수입위생조건 2차 협상
08. 11. 16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캐나다 현지조사
09. 3. 20	캐나다 농업식품부 장관, 한국 WTO 제소의향 통보
09. 4. 9	캐나다 정부, WTO에 한국 제소

2.2. WTO 제소 이후 절차

캐나다 정부가 WTO에 한국을 제소함에 따라 양국은 60일 이내에 양자간 협의를 추진하게 됨.

협의를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내에 분쟁해결기구를 구성하여 판결을 내리게 됨.

분쟁 해결기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까지 거칠 경우, 통상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표 4. WTO 제소 이후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 양자협약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착수(양국 간 일정에 관한 별도 협의가 없을 경우) - 60일 동안 논의 진행 가능
2단계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구성 - 양자협약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면,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구성 ⇒ 제3자인 전문가 3~5인 참여 - 검토 기간은 3~9개월 소요
3단계	○ 상소 - 패소국이 불복 시 4~5개월 내 상소보고서 채택 - 패소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결정 이행계획 보고

2.3. WTO 제소에 따른 주요 논쟁사항

형평성 및 최혜국대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캐나다는 국제수역 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 동일 지위를 획득한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6월부터 수입 재개된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는 불평등하다는 입장
-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을 위반했다고 주장

캐나다는 미국과 동등한 조건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를 통해 30개월 미만만을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서 제32조 제1항의 3(“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금지)은 30개월 미만을 수입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제34조 제3항(“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2에 따라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9.11>”)에 대해서 캐나다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2.4.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관련규정

2007년 5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결 내림.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개 부위만 제거하면 모든 부위를 교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도축검사 과정 등을 통해 광우병 감염 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도축된다 하더라도 OIE 기준에 의한 SRM이 제거되므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¹⁾

일각에서는 광우병 관련 OIE 기준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함. 그러나 OIE 기준은 동물검역에 관련해서 권고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강제성을 갖는 국제규범으로, OIE 기준보다 강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캐나다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임.

1) 농림수산식품부, 2008.4. 「미국산 쇠고기 협의결과 및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2.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캐나다와 같은 등급을 판정받은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30개월령 미만과 30개월령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른 수입조건을 적용받고 있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경우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이 연기되었으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및 뇌, 눈, 척수, 머리뼈 및 기계적 회수육 등이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됨.

표 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내용

구분	고시 내용	검역 지침	
30개월 미만 쇠고기	SRM (편도, 회장 원위부)	수입 금지	수입 금지
	4개 부위 (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 중단 (상업적으로 거래되지 않음)	반송 (뿔조각 및 잔여조각이 발견되는 경우는 예외)
	T-bone 스테이크 등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반입 허용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 생산제품 표기 없으면 반송 -연령 표시되지 않은 상자 불합격
	내장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반입 허용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 생산 제품 표기 없으면 반송 -매 수입건별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
	쇠고기 (갈비 등) 및 등뼈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반입 허용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 생산 제품 표기 없으면 반송
	분쇄육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반입 허용 -기계적회수육: 수입금지 -선진회수육: SRM·중추신경계가 포함되지 않은 선진회수육만 수입 허용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 생산 제품 표기 없으면 반송
			-기계적회수육: 불합격 -선진회수육: SRM·중추신경계가 포함된 경우 불합격
쇠고기 가공품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반입 허용 (단, SRM이나 기계적회수육을 원료로 사용 금지)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QSA’ 생산 제품 표기 없으면 반송 -SRM이나 기계적회수육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불합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반 송	

주 : 2008년 6월 21일 추가협상으로 협의된 내용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6. 기술협약 이후 예상 주요 쟁점사항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당시 이슈가 되었던 쇠고기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될 여지가 상존함. 캐나다의 경우 2008년 11월에도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점으로 보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캐나다의 쇠고기 품질시스템 관리제도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존재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시 수출증명제(EV) 대신 도입된 품질시스템 평가제도(QSA)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동일한 위험등급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허용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품질시스템 관리제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내장 내 광우병 유발 프리온의 분포범위, 30개월 미만 소의 내장 및 사골, 꼬리뼈의 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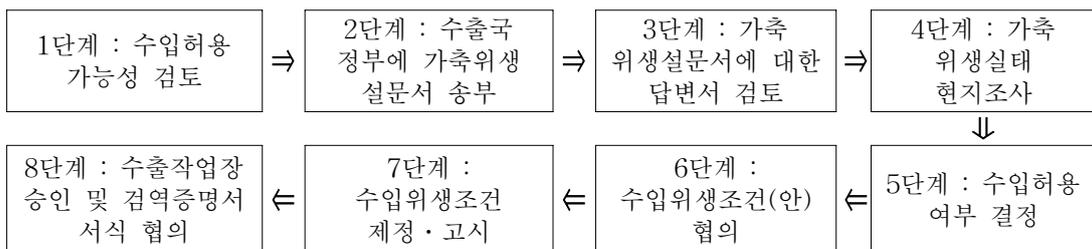
3. 수입재개 절차

3.1. 축산물 수입재개 절차

검역중단 시 6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나, 수입중지의 경우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함.

캐나다와 6단계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안) 논의 중 WTO 제소를 당함에 따라 WTO 분쟁해결 절차를 따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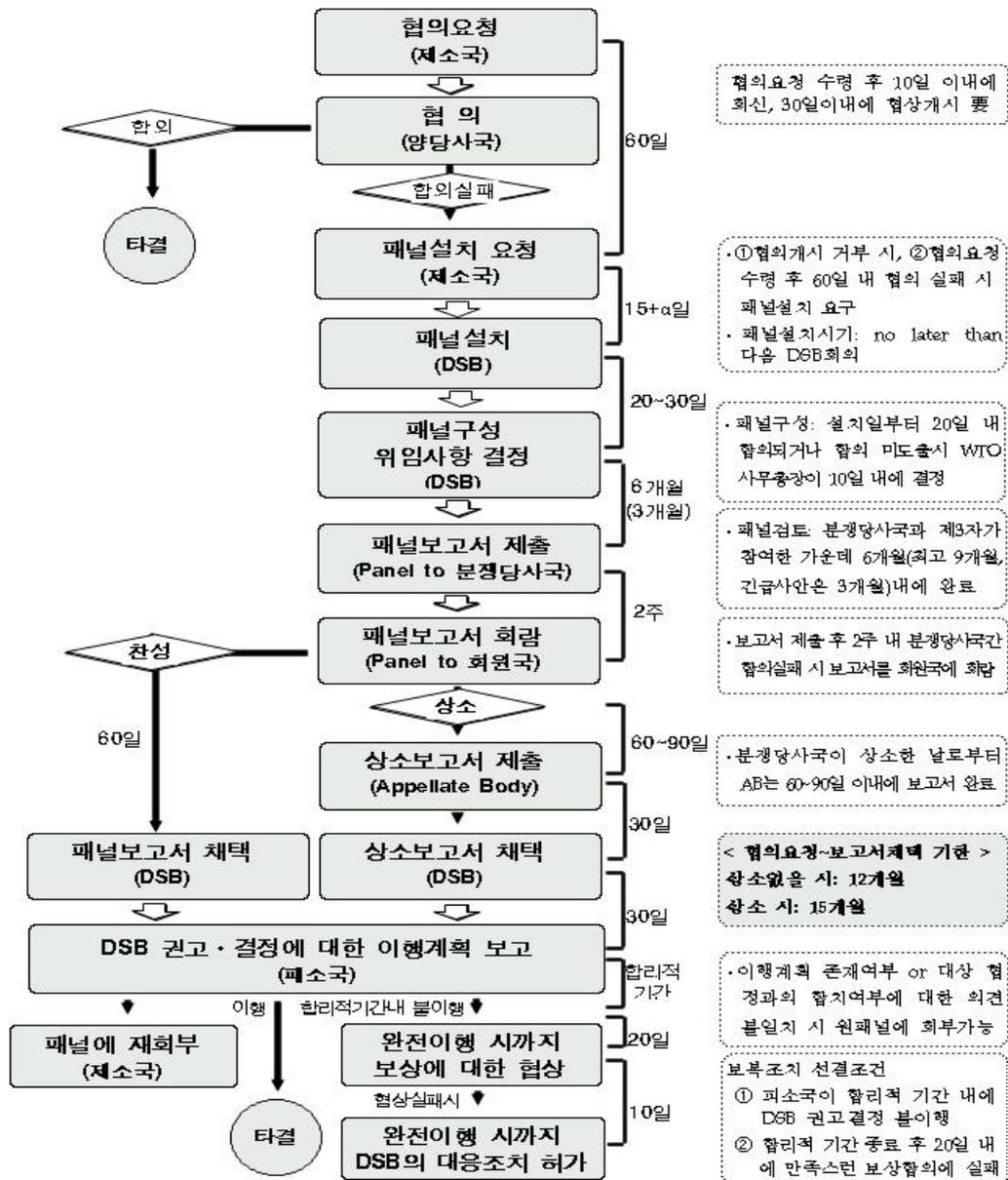
표 6. 축산물 수입위험 분석절차 8단계



3.2. WTO 분쟁해결 절차

양 당사국의 협의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패널(DSB)을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게 됨. 패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 패소국은 4~5개월 내 상소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 및 결정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함.

그림 1. WTO 분쟁해결 절차도



4.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반응

4.1.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는 전국의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4월 7~9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음.

소비자 조사결과, 2003년 이전 캐나다산 쇠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11.9%로 나타났으며,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88.1%로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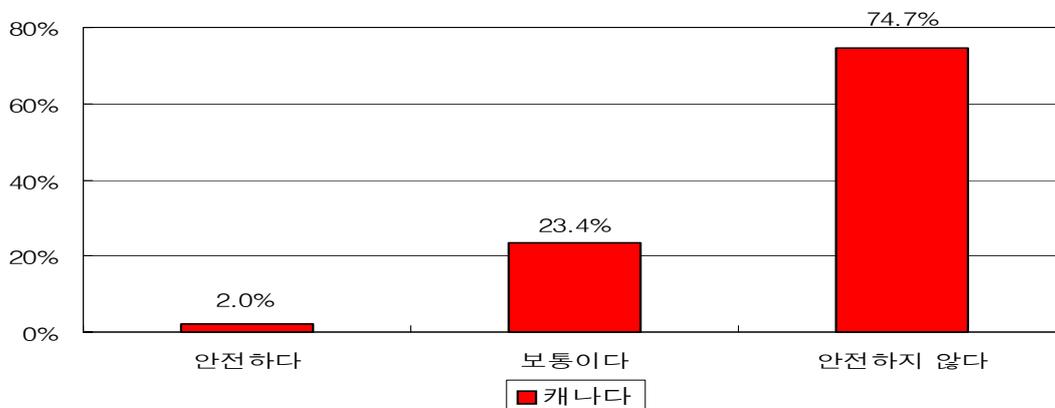
표 7. 2003년 이전 캐나다산 쇠고기 구매경험 조사

연도	구매경험 있음	구매경험 없음	총계
2003년 이전	94 (11.9%)	698 (88.1%)	792 (10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소비자 중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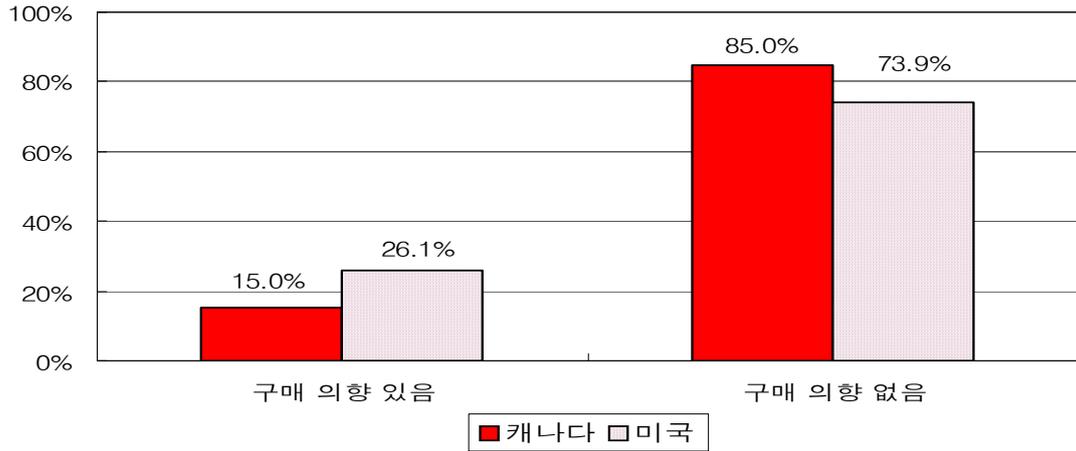
그림 2.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향후 캐나다산 쇠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15.0%로 조사됨. 이는 올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 조사결과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구매의향에 대하여 소비자의 26.1%가 구입을 희망한 것보다 더 낮은 수치임.

그림 3.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 구매 의향 여부



주: 미국산 쇠고기는 2009년 1월 조사한 수치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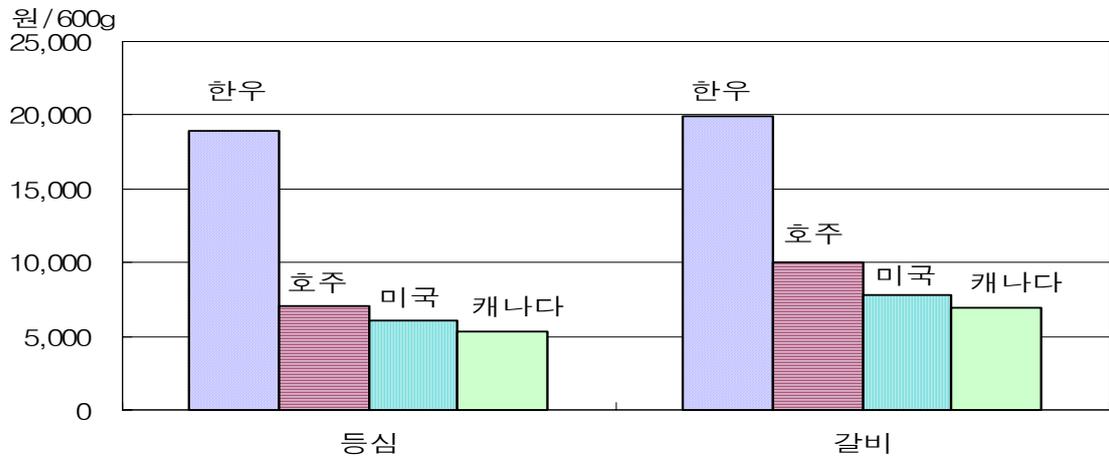
□ 캐나다산 쇠고기의 지불의향 금액 분석

한우 및 수입 쇠고기의 등심에 대한 구매의향 금액을 조사한 결과 600g당 가격은 한우 1등급(냉장) 19,050원, 미국산 등심(냉동)은 5,913원, 캐나다산 등심(냉동)은 5,096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7,000원으로 조사됨.

한우 및 수입 쇠고기의 갈비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을 조사한 결과 600g당 가격은 한우 갈비 20,023원, 미국산 갈비(냉동)는 7,583원, 캐나다산 등심(냉동)은 6,568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10,000원으로 나타남.

수입산 쇠고기 중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지불의향 금액(WTP)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파악됨.

그림 4. 한우 및 수입산 쇠고기의 지불의향금액 조사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소비자 조사.

4.2. 캐나다산 쇠고기 예상 수입량

캐나다 우육수출협회에 따르면 2009년 한국으로의 수출목표를 10,250톤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 15,000톤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2008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 22만 4,000톤의 4.6~6.7%에 해당하는 물량임.

그러나 실제로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안전성 논란과 함께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와의 경쟁으로 상기 수출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5.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

5.1. 시나리오의 구성

- 쇠고기 총 수입량은 전년 수준으로 설정, 2009년부터 캐나다산 수입재개 가정

기준치는 2009년 쇠고기 수입량을 2008년 수준인 23만 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캐나다와 수입재개 협의가 연내에 이루어져 2009년 당해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것을 가정하였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출 목표대로 한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시나리오로 상정하였으며, 2016년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2만 7,000톤으로 가정함.

5.2.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육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의 이전 수준 회복에 장시간 소요 전망

2009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하겠지만, 수입금지 이전의 쇠고기 수입량을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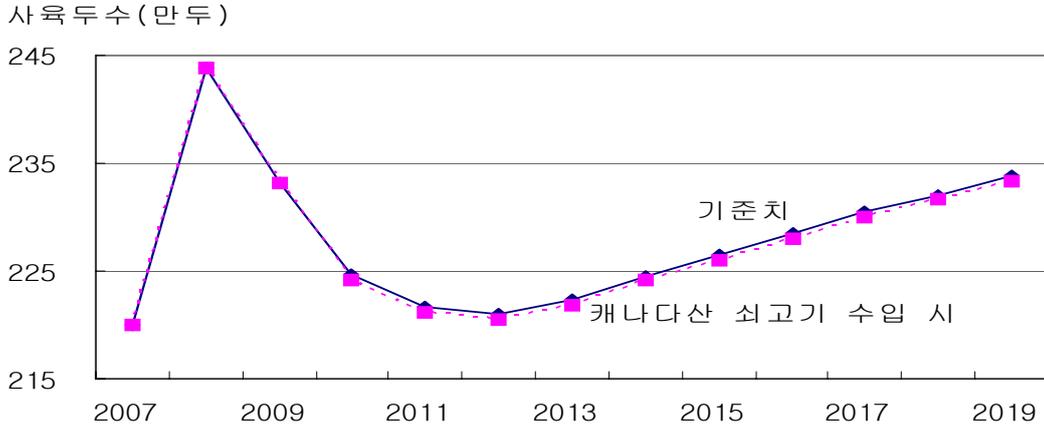
- 우리나라 소비자는 호주산이 캐나다산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캐나다산 쇠고기가 호주산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소비자 조사결과(2009. 4.)에서도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호주산보다 지불의향금액(WTP)이 오히려 낮게 나타남.

- 한육우 사육두수는 0.2% 감소 전망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어도 한육우 사육두수는 큰 차이가 없을 (0.2% 감소) 것으로 판단됨. 캐나다산 쇠고기가 전체 수입쇠고기에서 차지

하는 물량이 미미할 뿐 아니라, 미국 및 호주 등 다른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으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한육우 사육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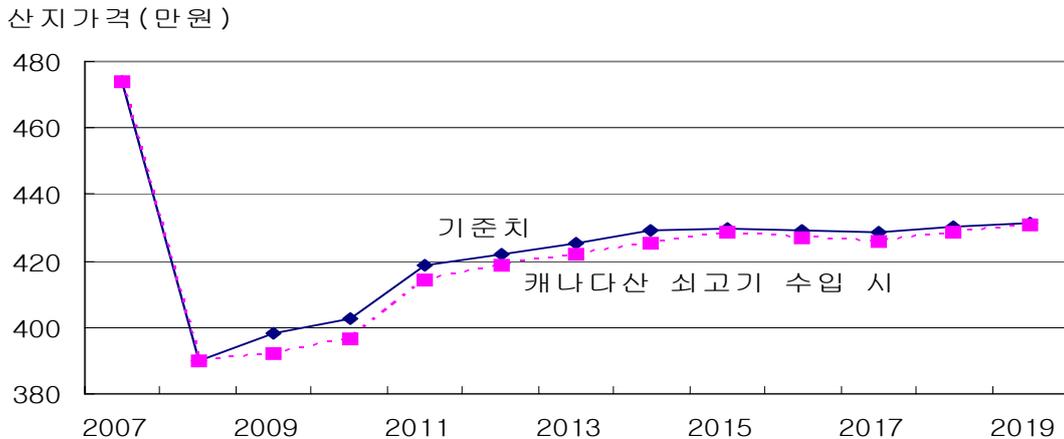


자료 : 농업관측정보센터.

□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0.2~1.6% 하락 전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캐나다의 목표량만큼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0.2~1.6% 하락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만약 기타 수입산 쇠고기와의 경쟁으로 수입물량이 감소할 경우,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축소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시 한우 수소 산지가격 전망



자료 : 농업관측정보센터.

5.3.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

□ 광우병 논란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감소될 우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으로 촉발된 광우병 논란의 부작용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우 산지가격도 영향을 받았음.

2008년 5~7월까지 비경제적 요인(심리요인)이 가격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여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8월 이후부터 진정되기 시작하였음.

따라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로 광우병 논란이 다시 촉발될 경우 한우 고기 수요가 소비 불안 심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한우 산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표 8. 한우가격 하락요인별 기여도

단위 : %

	한우가격 하락률	출하물량	수입량	소득	심리요인
2008년 4월	-13.0	-15.3	-4.4	5.1	1.6
2008년 5월	-19.8	0.4	-5.9	5.1	-19.4
2008년 6월	-24.9	-5.5	0.0	5.1	-24.5
2008년 7월	-28.4	-9.7	-1.2	4.0	-21.6
2008년 8월	-28.6	-27.3	3.8	4.0	-9.1
2008년 9월	-26.8	-1.1	-3.9	4.0	-25.8
2008년 10월	-26.0	-13.4	-9.0	0.7	-4.3
2008년 11월	-24.1	-11.0	-8.2	0.7	-5.7
2008년 12월	-22.5	-23.4	-2.8	0.7	3.0

주: 2008년 9월의 경우 제수용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이나, 2008년의 경우 조기출하로 출하물량의 영향이 크지 않았음(-1.1%). 따라서 9월 심리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6. 시사점

□ 광우병 논란 재발 방지대책 필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당초 캐나다측의 목표대로 수입이 되어도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편임.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와의 경쟁으로 당초 수입목표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따라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되어도 국내 한육우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광우병 논란이 재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광우병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광우병 논란으로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재발될 경우 한육우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한육우 수요 위축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이 파생될 수 있음.

□ 수입재개 협상과정의 투명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2008년 4월 11일에 협상을 시작하여 동월 18일에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으로 마감하여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부족하였음.

따라서 캐나다와의 수입협상에서는 협상과정의 투명화와 함께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필요 있음.

□ 고급육 생산과 시장 차별화로 경쟁력 확보해야

소비자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한육우의 가장 큰 경쟁력은 품질과 안전성이므로, 수입 쇠고기 시장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중요함.

가격 하락국면에서 한우 쇠고기의 등급간 가격 격차는 고급육일수록 큰 값을 보이며, 상승국면에서는 등급간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특징을 보임. 고급육 생산 및 시장차별화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음.

- 유통투명화를 통한 시장차별화 및 고급육 생산에 전념
- 지역 한우 암소개량사업 도입, 고능력 한우 암소개량센터 조성 등
- 대규모 조사료 단지 조성, 우량종자 보급 확대, 조사료유통활성화 등
- 송아지 설사 및 유사산 질병 예방 지원 확대
- 농가 자율학습조직 구성 지원, 한우 교육기관 및 전문기술교육관 설치
- 가격변동 위험 분산 체계 구축을 위해 가격 안정제 및 가격 보험의 도입 필요
- 도축장 구조조정 및 도축세 폐지
- 시도 단위 광역사업단(12개소) 및 대형축산물가공유통업체 육성
- 농가조직 중심으로 정책사업 지원체계 개편
- 우수브랜드 육성으로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판매망 확보 노력
- 홍보 및 판촉행사 강화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필요
- 직거래장터, 브랜드가맹점·직영점 등 직거래 확대
- 소비자 판매가격 주기적 조사·공표 등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발행 목록

2009년

- 제55권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영향분석(허덕, 이정민, 이형우)
- 제54권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계의 인지도 조사 결과 (김창길, 주현정)
- 제53권 국제곡물가격이 곡물가공품 가격에 미치는 파급시차 (김태훈, 김배성)

2008년

- 제52권 농업·농촌에 대한 2008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51권 미국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어명근)
- 제50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김진년)
- 제49권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의 파급 영향과 시사점 (허덕, 이정민)
- 제48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양계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허덕, 우병준, 이형우)
- 제47권 사료가격 상승이 양돈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덕, 김현중)
- 제46권 유가상승이 시설채소 농가에 미치는 영향 (정은미, 정학균, 김수림, 윤선희)
- 제45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2007년

- 제44권 사육 여건 변화가 양돈소득에 미치는 영향 (허덕, 정민국, 김현중)
- 제43권 금년 김장철 채소 가격 및 김장 수요 전망 (박기환, 송성환)
- 제42권 해외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시사점 (신용광, 황윤재)
- 제41권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김창길, 김태영, 이상건)
- 제40권 최근 소값 동향 분석 (허덕, 송주호, 정민국, 이정민)
- 제39권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김동원, 박혜진)
- 제38권 미국 정부의 2007년 농업법 제안과 시사점 (임송수)
- 제37권 기후변화협약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 제36권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김수석, 박석두)

2006년

- 제35권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박대식, 마상진)
- 제34권 DDA 협상 중단의 의미와 전망 (임송수)
- 제33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병률, 김배성, 조영수, 이용호)
- 제32권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 실태 (김창길, 김태영)
- 제31권 미국의 FTA 농산물 양허방식과 시사점 (최세균, 허주녕, 박성진)
- 제30권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최세균)

2005년

- 제29권 김치 안전성 파동과 김장 수요 전망 (송성환, 김연중)
- 제28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와 과제 (김영훈)
- 제27권 쌀 공공비축제 도입과 수확기 시장안정 대책 방향 (박동규)
- 제26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 (강창용, 교육)
- 제25권 중국 위안화 절상이 국제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김배성, 최정섭)
- 제24권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배경과 주요 쟁점 (김정호)
- 제23권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최세균, 허주녕)
- 제22권 농업인의 의식 변화와 농정 현안에 대한 인식 (김동원, 박혜진)
- 제21권 친환경과실 소비 실태 및 전망 (김경필, 박미성)
- 제20권 독일과 프랑스 농민단체의 농정참여제도 (김수석)
- 제19권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본 2005년 북한의 농정전망 (권태진)
- 제18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기회, 중국 (권오복)

2004년

- 제17권 농지제도 개편의 방향과 추진방안 (박석두, 송미령, 김수석, 김홍상)
- 제16권 쌀농가 소득·경영안정 직불제 도입과 양곡관리 제도 개편 (박동규)
- 제15권 2004년산 쌀 수급 및 가격 전망 (김명환, 김혜영)
- 제14권 쌀 협상 시한에 관한 견해 분석 (임송수)
- 제13권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이용선, 김배성, 정학균)
- 제12권 기업농의 조건: 가능성과 전망 (김정호)
- 제11권 미 광우병 발생 이후 쇠고기 소비 변화 (신승렬, 송주호, 김철민)
- 제10권 농업협상 기본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 제9권 쌀 농업의 규모 효과와 구조 정책 (김정호)
- 제8권 일본과 대만의 쌀 시장개방과 시사점 (김태곤, 정정길)
- 제7권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법의 생산비 비교 (김창길, 김태영)
- 제6권 최근 가축질병 발생이 육류 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신승렬, 송우진, 이형우)

2003년

- 제5권 수요차별 수입쌀 구매의향 전망 (이계임, 김민정)
- 제4권 농가부채문제 진단과 중장기 대응방향 (박성재, 황의식)
- 제3권 미국과 EU의 가격·소득지지정책 (김태곤)
- 제2권 유럽연합의 2003년 개혁안과 농업협상의 관계 (임송수)
- 제1권 쌀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 (김명환)